#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11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김 윤·박지원·임미애

이훈기 • 김기표 • 박희승

백승아 · 김남희 · 남인순

박해철 · 김남근 · 김승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될 경우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신설 등).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수급불안정의약품"이란 수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83조의4의 제목 중 "국가필수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필수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불안정의약품(이하 "국가필수의약품등"이라 한다)"으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필수의약품"을 각각 "국가필수의약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국가필수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국가필수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필수의약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필수의 약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필수의 약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

- 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 3. 수급불안정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의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의 권고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품목의 판매허가,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필수의약품등

제92조제1항제3호 중 "국가필수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0. "수급불안정의약품"이란 수
	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공
	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의
	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u>
	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
	<u>다.</u>
제83조의4( <u>국가필수의약품</u> 의 안	제83조의4( <u>국가필수의약품등</u> 의
정공급기반 구축) ① 보건복지	안정공급기반 구축) ①
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u>국가필수의약품</u> 과 관련하여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정의약품(이하 "국가필수의
	<u>약품등"이라 한다)</u>
1. <u>국가필수의약품</u> 안정공급 종	1. <u>국가필수의약품등</u>
합대책의 수립・추진	
2. <u>국가필수의약품</u> 의 안정공급	2. <u>국가필수의약품등</u>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	
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	
<u>&lt;신 설&gt;</u>	3. 수급불안정의약품과 동일한

 3.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

 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

 무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u>국가필수의약품</u> 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성분을 가진 의약품의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u>4.</u> <u>국가필수의약품등</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등
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
필수의약품등을 판매하거나 수
입하려는 자에 대해 성분명 사
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
항의 권고에 따라 국가필수의
약품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려
는 자가 품목의 판매허가, 수입
허가 또는 수입신고(변경허가
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
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5</u>
국가필수의약품
<u> </u>

- ③ <u>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 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 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둔다.
-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 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 터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 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 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 터"라 한다)를 둔다.
  - 1. (생 략)
  - 2. 국가필수의약품
  - 3. (생략)
  - ② ~ ⑥ (생 략)
- 제92조(센터의 사업) ① 센터는 기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 2의2. (생 략)
  - 3.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3. 국가필수의약품등-

⑥ 국가필수의약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u> ⑦</u> 제6항
제91조(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
터의 설립) ①
<u>.</u>
1. (현행과 같음)
2. 국가필수의약품등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2조(센터의 사업) ①
1. ~ 2의2. (현행과 같음)
0 그리코 시시고 ㄷ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	
된 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